

재심의결정통지서

접수번호: - -
성 명:
주 소:

귀하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신고(위로금등의 지급 신청) 재심의신청에 대하여
첨부한 심의·결정통지서(지급결정서, 지급기각결정서)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리
니 아래 요령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.

1. 위원회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

- 재심의결정통지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
제기할 수 있습니다.

2. 지급결정에 동의할 경우(위로금등의 지급 신청자에 한함)

위원회에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위로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위로금등 지급결정 동의 및 지급청구서 1부

나. 위로금등 지급결정서 정본 1부

다.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1부(용도: 위로금등의 청구 및 수령용)

-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: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1부
- 대리인이 위로금등을 지급받고자 할 경우: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및 대리인의 인
감증명서 각 1부

첨부 1.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심의·결정서 정본 1부(강제동원 피해 신고자에 한함)

2. 위로금등 지급결정서 또는 위로금등 지급기각결정서 정본 2부(위로금등 지급 신청자에 한함)

3. 지급결정 동의 및 지급청구서 용지 1부(위로금등 지급결정자에 한함)

년 월 일

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위원장 인

※ 위로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, 첨부한 위로금
등 지급결정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
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.

210mm×297mm(보존용지(1종) 70g/m²)